

제17차 정기이사회 회의록

- 일 시 : 2019. 12. 20.(금), 08:00
- 장 소 :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
- 출석임원 : 총8명(총 10명중 8명 참석)
- 주요안건

구 분	안 건 명
보고 안건	제32호 근로자이사후보 선거관리에 관한 내규 개정 보고
	제33호 직원근무평정내규 개정 보고
	제34호 업무직 등 보수내규 개정 보고
	제35호 제16차 임시이사회(서면) 결과보고
의안 안건	제64호 120다산콜재단 정관 개정의 건
	제65호 이사회운영규정 개정의 건
	제66호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의 건
	제67호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의 건
	제68호 인사규정 개정의 건
	제69호 복무규정 개정의 건
	제70호 보수규정 개정의 건
	제71호 2020년 주요사업계획(안)의 건
제72호 2020년 예산(안)의 건	

제17차 정기이사회 회의내용

1. 회의개요

- 회 의 명 : 제17차 정기이사회
- 기 관 명 :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
- 일시 및 장소 : 2019. 12. 20.(금), 08:00,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
- 참석현황 : 총8명 참석(재적임원 10명 중 이사 7명, 감사 1명 참석)
 - 재적임원 : 김민영, 강을영, 권주연, 권혜원, 김연호, 박경은, 이남신, 박진영, 백일현, 정광천
 - 출석임원 : 김민영, 강을영, 권주연, 권혜원, 박경은, 박진영, 이남신, 정광천
- 안건목록

구 분	안 건 명	비 고
보고안건	제27호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내규 개정 보고의 건	
	제28호 사원증 관리 내규 제정 보고의 건	
	제29호 개인정보보호 관리 내규 제정 보고의 건	
	제30호 직원 채용에 관한 내규 개정 보고의 건	
	제31호 사무위임전결 내규 개정 보고의 건	
의안안건	제56호 120다산콜재단 정관 개정의 건	원안가결
	제57호 인사규정 개정의 건	수정가결
	제58호 복무규정 개정의 건	원안가결
	제59호 보수규정 개정의 건	원안가결
	제60호 규정관리규정 개정의 건	원안가결
	제61호 2019년 안전기본계획(안)의 건	원안가결
	제62호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(안)의 건	원안가결

- 기록부서 : 기획홍보팀

2. 논의결과

(1) 의안번호 64호 <120다산콜재단 정관 개정의 건>

□ 안건주요내용

- 근로→노동, 노동이사→노동자이사로 변경
- 노동의 주체성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서울시 조례 개정보다 앞서 ‘근로자이사’를 ‘노동이사’로 변경한 바 있으나(2018. 6.), 개정된 조례상의 용어에 맞추어 ‘노동이사’에서 ‘노동자이사’로 변경
- 정관 별표3 재단 정원표의 표기변경
- 별표3의 정원표 중에서 5~6급을 통합 표기하고, 정원외인원을 삭제

□ 참석자 발언요지

- 특이사항 없음

□ 논의결론 : 원안가결

(2) 의안번호 65호 <이사회운영규정 개정의 건>

□ 안건주요내용

- 용어 ‘근로’를 ‘노동’으로 변경
- 서울특별시 조례 개정(2019. 3. 28.)으로 근로자이사의 대체어를 조례상 용어인 ‘노동자이사’로 통일

□ 참석자 발언요지

- 특이사항 없음

□ 논의결론 : 원안가결

(3) 의안번호 66호 <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의 건>

□ 안건주요내용

- 용어 ‘근로’를 ‘노동’으로 변경
- 임원 결격사유에 다음과 같이 ‘위력에 의한 성범죄’를 추가
 -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
□ 참석자 발언요지

- 특이사항 없음

□ 논의결론 : 원안가결

(4) 의안번호 67호 <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의 건>

□ 안건주요내용

- 제8조(기구) ⑦항 [별표3] 기구표 개정(2본부 12팀→1실 2본부 12개팀)
 - 시정 핵심사업인 청렴, 반부패, 인권 등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윤리경영실 신설

□ 참석자 발언요지

- 윤리경영실 업무정의의 명확화와 우리 재단에 맞는 인권경영 운영이 될 수 있기를 바램

□ 논의결론 : 원안가결

(5) 의안번호 68호 <인사규정 개정의 건>

□ 안건주요내용

- 제33조(직권면직) 용어 정정(‘무계결근’ → ‘무단결근’)

□ 참석자 발언요지

- 제33조 3항 내용 중 “월1일부터 말일까지”로 기간을 한정하는 것은 일부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될 수 있음. 따라서 연속되는 30일 이내로 기간을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임. 이에 임원들이 수정가결을 동의하여 첫 결근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기간을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기로 함.

□ 논의결론 : 수정가결

(6) 의안번호 69호 <복무규정 개정의 건>

□ 안건주요내용

- 결근 기준 명확화 및 제출서류 개정
 - 결근 시 결근사유에 대한 증빙서류 미제출 시 무단결근으로 간주
- 무계조퇴의 용어 확립 및 무단 지참·외출·조퇴 시 경위서 작성 기준 강화
 - ‘무계조퇴’ → ‘무단조퇴’로 용어 변경
 - 사업장 무단이탈 시(무단 지참·외출·조퇴) 경위서 작성 의무화
 - 지참 시 경위서 작성 기준 개정 : 연 12회(연간 제재기준) 추가
- 단체협약 근거 운영 중인 휴가제도의 명문화를 위한 규정 신설
 - 안식휴가, 장기재직휴가, 자녀돌봄휴가
-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규정 보완
 -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기간 확대(출산한 날부터 30일 → 90일)
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기간 확대
(육아휴직 1년 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본 1년 보장)
- 가족돌봄휴가 신설(가족돌봄휴직(90일)의 범위 내에서 가족돌봄휴가(10일)사용)
-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규정 신설

□ 참석자 발언요지

- 특이사항 없음

□ 논의결론 : 원안가결

(7) 의안번호 70호 <보수규정 개정의 건>

□ 안건주요내용

- 직무대리자의 보수 지급기준 추가
 - 원 직급에 해당하는 보수 지급, 직책보조수당과 업무수당은 직무대리 직책에 준하여 지급
- 유계결근, 무계결근의 용어 통합
 - ‘유계결근, 무계결근’→‘결근’
- 징계처분자의 보수감액 기준에 대한 연계조항 오류 정정
 - 인사규정 제44조 → 제45조
- 부가급여에 ‘장애수당’ 항목 추가 및 ‘반장수당’ 항목명 변경
 - 장애수당 월 10만원 항목 추가
 - 반장수당(업무직) → 소장수당(업무직)

□ 참석자 발언요지

- 특이사항 없음

□ 논의결론 : 원안가결

(8) 의안번호 71호 <2020년 사업계획(안)의 건>

□ 안건주요내용

- 2020년도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
 - 시민중심 상담시스템 운영
 - 상담품질 향상을 위한 직원 역량 강화
 - 시민중심 맞춤형 상담서비스 발굴
 -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강화
 - 일반관리비

□ 참석자 발언요지

- 특이사항 없음

□ 논의결론 : 원안가결

(9) 의안번호 72호 <2020년 예산(안)의 건>

□ 안건주요내용

- 2020년 예산(안)을 확정하고자 함
 - 수입예산 : 총 24,377,529천원

(단위 : 천원)

구분	2019년	2020년(안)	증 감	
				%
총 계	22,563,024	24,377,529	1,814,505	8.0
서울특별시 출연금	21,528,509	23,031,534	1,503,025	7.0
잉여금	1,034,515	1,345,995	311,480	30.1

· 지출예산 : 총 24,377,529천원

(단위 : 천원)

전체	단위	세 부 사 업	2019년	2020년(안)	증 감	
						%
		총 계	22,563,024	24,377,529	1,814,505	8.0
		120다산콜재단 운영	22,563,024	24,377,529	1,814,505	8.0
		시민중심 상담시스템 구축	2,199,689	1,478,848	△720,841	△32.8
		인공지능 기반 대화형서비스(챗봇) 시범 운영	50,000	130,000	80,000	160.0
		상담정보관리시스템 관리·운영	2,149,689	1,348,848	△800,841	△37.3
		상담품질 향상을 위한 직원 역량 강화	135,600	148,400	12,800	9.4
		상담사 역량강화 교육	135,600	148,400	12,800	9.4
		시민중심 맞춤형 상담서비스 발굴	40,000	29,800	△10,200	△25.5
		상담지식정보 현행화	0	4,800	4,800	순증
		상담데이터 분석 및 활용	40,000	25,000	△15,000	△37.5
		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강화	111,920	110,520	△1,400	△1.3
		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프로그램 운영	111,920	110,520	△1,400	△1.3
		일반관리비	20,065,815	20,946,754	880,939	4.4
		일반관리비	20,065,815	20,946,754	880,939	4.4
		예비비	10,000	1,663,207	1,653,207	16,532.1

□ 참석자 발언요지

- (주무부서)임금피크제 미도입에 따라 2020년 예산(안) 중 인건비를 2019년 총인건비 예산과 동일하게 하고 그 차액을 예비비로 잠정 편성하여 승인하고 2020년 임금피크제 도입 시 인건비로 재편성

※ 시민소통기획관(시민봉사담당관) 검토보고서(따로붙임) 참고

□ 논의결론 : 원안가결